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토 보고서

2021. 11. 30. (화)

검토 안건	발의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1. 검토안건

- 안건명 :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
- 제출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의안번호 : 21-119)

3. 제출이유

마포구 영유아의 연령별 단계에 맞는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1년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

3)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4) 소요예산 : 70,000천원(구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내 용	비 고
	총 계	70,000		
서비스 지원비	영유아발달검사	45,000	25,000원×1,800명	
	심층진단검사	10,000	250,000원×40명	
	프로그램 운영비	8,000	치료연계비 지원	
홍보 등 사업진행비	홍보비	4,000	성과보고서 제작	
	사업진행비	3,000	사무관리비 등 진행비	

다. 세부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 2022.1.~2.
- 지역사회 홍보 및 신청 · 접수 : 2022.3.~10.
- 발달 스크리닝 실시 및 서비스 지원연계 : 2022.3.~12.
- 과정 및 사업 모니터링 : 2022.6.~12.

5. 관계법령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의 위탁)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마포구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을 통해 연령별 단계에 맞는 발달을 돋고,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마포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의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위탁 가능한 사무로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 위탁사무 내용과 범위는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 관련법규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